

#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

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



- 1 사업목적
- 2 사업내용
- 3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
- 4 참여 신청 및 자격
- 5 선정 방법
- 6 지원금 지급 방법
- 7 공동안전관리자의 지원방안
- 8 공동안전관리자의 관리방안
- 9 연간 추진일정(안)
- 10 질의응답

CONTENTS



1

# 사업목적



# 1

## 사업 목적

### ■ 사업목적

- ✓ 5인이상~50인미만 사업장 **중대재해처벌법 확대**에 따라 인력,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**안전관리체계**를 구축할 수 있도록 **지원**
- ✓ **지역별 · 업종별 협동조합, 사업주 단체**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**안전관리**를 **공동으로 추진**할 수 있도록 **공동안전관리자**를 통해 **방문 컨설팅** 지원



# 1 사업 목적

## ■ 공동안전관리자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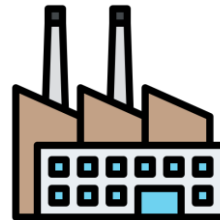
- ✓ 상시근로자 5~49인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**안전관리체계**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(컨설턴트 개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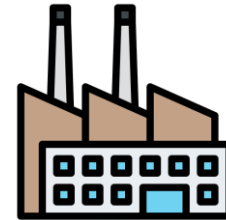
공동안전관리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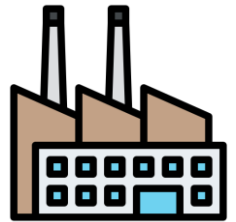
방문컨설팅 등 지원



안전보건담당자



안전보건담당자



안전보건담당자

2

# 사업내용



## 2

# 사업 내용

## ■ 사업내용

- ✓ (지원대상) 지역 · 업종별 협동조합, 사업주 단체, 협회 등 사업장  
관계자로 구성된 **각종 단체, 산업단지 관리 단체** 등

### < 대상 세부구분 >

구분	내용
협동조합	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중소기업자들로 구성된 단체 * 연합회, 지역조합, 사업조합 등
사업주단체	2인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* 건설업 사업주단체는 참여 불가
협회	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원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단체
산업단지 관리 단체	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 또는 관리업무의 전부 · 일부를 위탁받은 단체
기타 단체	기타 2인 이상 사업주로 구성된 단체 등

※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**안전관리전문기관** 등은 **참여 불가**



## 2

# 사업 내용

## ■ 사업내용

✓ (지원내용) 600명(사업예산 120억원)

❖ 공동안전관리를 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· 운영 지원금(월 250만원  
한도, 총 운영비의 80% 수준)을 최대 8개월 지원

※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보험료, 운영경비 포함

❖ 공동안전관리자는 다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되, 사업장당 월 1회  
이상 방문 컨설팅 지원

※ 지원 사업장수,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 · 단체  
등에서 여러 명을 채용가능





## 2

# 사업 내용

### ■ 사업내용(기본개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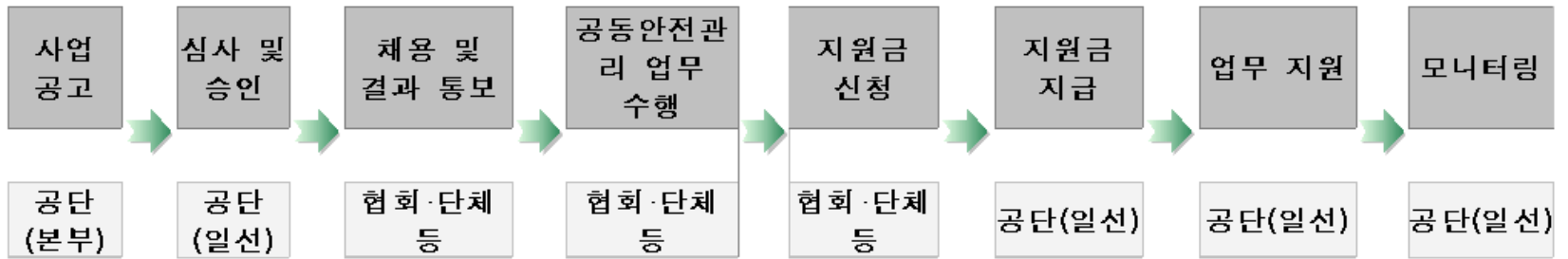




## 2

# 사업 내용

### ■ 사업추진절차





## 2

# 사업 내용

## ■ 지원금의 지급사례

(사례 1) 협회 · 단체 등 총 운영비(1인) 월 300만원 산정시 →

지원금(총 운영비 80%, 지원한도 250만원) 월 240만원

(사례 2) 협회 · 단체 등 총 운영비(1인) 월 320만원 산정시 →

지원금(총 운영비 80%, 지원한도 250만원) 월 250만원



## 2

# 사업 내용

## ■ 지원금의 지급사례

(사례 1) 협회 · 단체 등 총 운영비(3인) 월 320만원 산정시 →  
 지원금(총 운영비 80%, 지원한도 250만원) 월 250만원 × 3명  
 = 월 750만원

(사례 2) 협회 · 단체 등 총 운영비(10인) 월 320만원 산정시 →  
 지원금(총 운영비 80%, 지원한도 250만원) 월 250만원 × 10명  
 = 월 2,500만원

3

#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



## ■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

- ✓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**월 1회 이상** 컨설팅을 통해 단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
  - ☞ 안전관리 담당자(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)를 지정토록 하고 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수준향상 도모

## ■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

### <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단계별 컨설팅 내용 >

단계	주요 수행 내용
<b>1단계-기반구축</b> (담당자지정/ 사전교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</li> <li>-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별로 담당자 지정, 명확한 미션 부여</li> <li>▶안전보건교육 · 훈련 지원</li> <li>-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</li> </ul>
<b>2단계-현장안착</b> (담당자 역할 수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</li> <li>-담당자 조치사항 지속적 숙지</li> <li>-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(담당자 1:1 컨설팅 후 자체 점검수행 지원)</li> <li>▶안전관리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</li> </ul>
<b>3단계-안전관리체계구축</b> (경영자 리더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경영자 리더십 계발</li> <li>-사업주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관심 유도</li> <li>-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안전 투자 조인</li> <li>▶근로자 참여 컨설팅</li> <li>-안전제안제도 운영</li> <li>-위험성평가 참여</li> <li>-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TBM 지원</li> </ul>



## ■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

- (담당자 지원) 안전관리 담당자(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)가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**교육 · 훈련 및 지원**

### 《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》

####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

-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④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,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⑥ 산업안전 ·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




## ■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

- (담당자 역량강화) 담당자가 직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

안전보건교육 **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**

- ✓ 교육대상자에 대한 **종합적인 안전보건교육 계획**을 수립하고 기본  
계획에 따라 **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 · 실시 지원**
- ✓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**교육방법, 교재 준비 지원**
- ✓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TBM 등 **교육 지원**



## ■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

- ✓ (안전관리체계)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고발생 주요요인을 평가하여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
  - ❖ 사업장 점검 시 담당자와 함께 **현장 컨설팅을 병행**하면서 실시
  - ❖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에서 **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**하고 **개선 및 결과**를 **공유**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중점

4

# 참여 신청 및 자격



## ■ 참여 신청 및 자격

- ✓ (참여 신청) 공동안전관리 희망 지역(관할 공단 31개 일선기관)을 구분하여 신청(사업수행 희망 지역 별로 신청) ※ 신설지사(경기남부)는 경기지역본부에서 추진
- ✓ (제출서류) 참여 신청서, 단체(사업자)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
- ✓ (제출방법) 공단 일선기관 온·오프라인 방식 서류 제출(방문, 우편 또는 메일)
- ✓ 지원 대상 및 조건

### 협동조합 (고용주)

- 사업주 단체로 연합회, 조합, 사업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에 **해당되지 않는 조합**
  - 1) 휴면, 해산, 휴면건의, 해산건의, 휴폐업, 파산 조합
  - 2) 설립 이후 2회 이상 총회를 미개최한 협회·단체 등
    - ※ 2022년 이후 설립된 협회·단체 등은 적용제외
  - 3) 이사장(대표), 상근이사 2명 모두 공석인 조합(신청일 기준)

### 공동안전 관리자 (근로자)

- 만18세 이상 (2004.1.1.이전 출생자)으로 기준공고일 (2023. 1. 1) 이후 고용된 근로자로서 아래 조건에 **해당되지 않는 자**
  - 1)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 인건비 사업 수혜근로자
  - 2)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증이거나, 타 기업 근무 증인자
  - 3) 채용 예정 단체의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의 직계존속인자(범위는 민법에 따름)
  - 4) 채용 예정 단체의 이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참여단체의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



# 4

## 참여 신청 및 자격

### ■ 참여 신청 및 자격

✓ (자격요건) ※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①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
-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
- ③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\* 보유자

※ 산업안전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, 전기안전기술사, 화공안전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, 산업안전지도사(전기안전, 화공안전, 기계안전)에 한함

※ 공동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협·단체 소속 직원, 공동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직원 등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하는 경우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되, 공동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(위배 시 지원취소)

✓ 공단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
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

5

# 선정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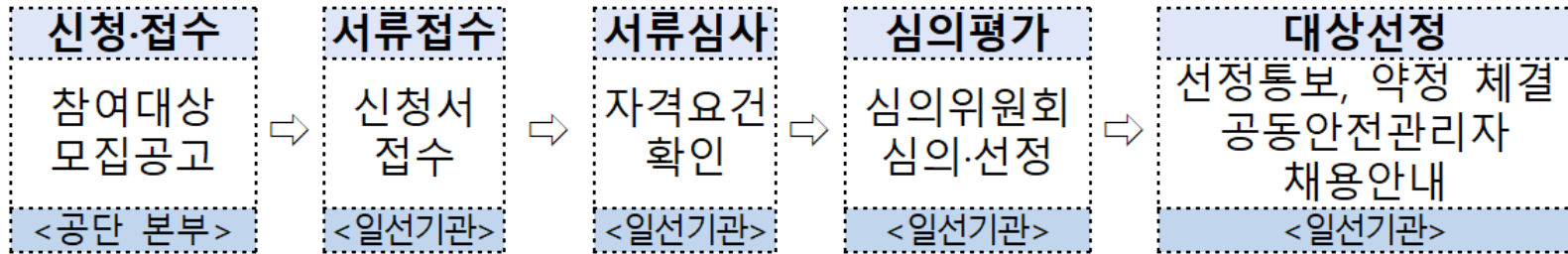


# 5

## 선정 방법

### ■ 선정 방법

#### <1차 공고 및 선정 추진절차>



- ✓ 지역별 사업물량을 부여하고 선정심의 점수에 따라 대상 선정
  - 사업목표: 총 600명
  - 1차 접수결과 신청수가 목표 초과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기준 높은 점수순으로 우선선정(세부기준을 별도 안내)
  -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이상 내·외부 심의위원 구성
- ✓ 1차 접수 완료 후 추가 사업공고는 1차 협회·단체 등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단 일선기관에서 진행
- ✓ 1차 접수 후 목표가 미달된 공단 일선기관에서 사업 종료시까지 수시로 사업대상을 선정



## ■ 선정기준(안)

구 분	평가항목(평가지표)	평가 기준	점수
정량평가 (30)	총회 개최 여부 (5) (최근 2년 '22~'23년)	2회 이상 정상 개최	5
		2회 미만 개최	2
	이사장, 상근이사 공석 여부 (5) (사업 신청일 기준)	공석 없음	5
		1인 공석	0
	신설조합 여부 (5) (사업 신청일 기준)	설립인가후 3년 이내	5
		설립인가후 6년 이내	4
		설립인가후 9년 이내	3
		설립인가후 12년 이내	2
		설립인가후 15년 이상	1
	법정 발기인수 대비 조합원 (5) (사업 신청일 기준)	증가율 100% 이상	5
		증가율 80% 이상 100% 미만	4
		증가율 60% 이상 80% 미만	3
		증가율 40% 이상 60% 미만	2
		증가율 20% 이상 40% 미만	1
		증가율 20% 미만	0
	공동사업 수익 총액 (10) (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)	사업수익 3억원 이상	10
		사업수익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9
		사업수익 5천만 이상 1억원 미만	8
사업수익 1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		7	
사업수익 1천만원 미만		6	

※ 동 선정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

## ■ 선정기준(안)

정성평가 (70)	채용 및 사업진 (70)	공동사업 현황 및 신규 채용 필요성 (30)	매우 우수	30
			우수	25
			보통	20
			미흡	15
			매우 미흡	10
	채용 후 직무수행 및 공동사업 추진 계획 (30)	매우 우수	30	
		우수	25	
		보통	20	
		미흡	15	
		매우 미흡	10	
	근로환경, 교육훈련 복지제도 등 (10)	매우 우수	10	
		우수	9	
		보통	8	
		미흡	7	
		매우 미흡	6	

※ 동 선정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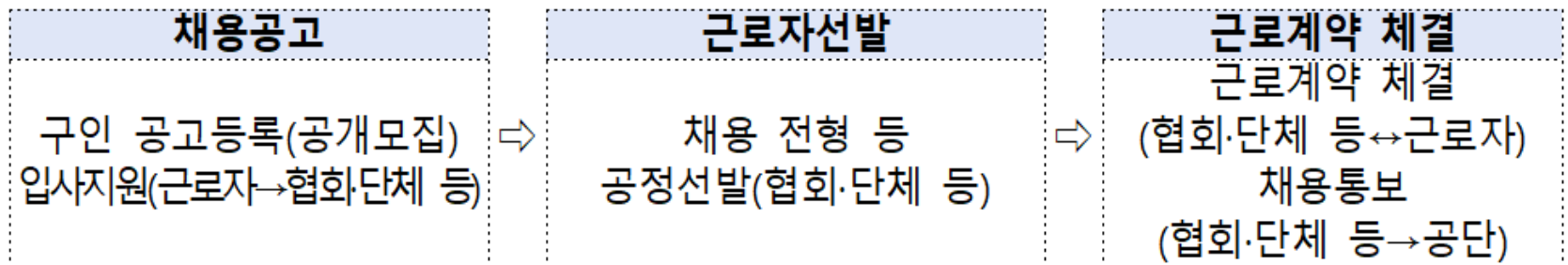
5

# 선정 방법

## ■ 선정 방법

- ✓ (선정결과 발표) 선정심사 후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에 발표  
및 선정 협회·단체 등에 개별 통보
- ✓ 채용 통보 시기: 근로자계약 체결 후 **1개월** 이내(협회, 단체→공단)
  - ※ 근로 개시 이후에 근로자의 **결격사유가 확인**될 경우, 해당 근로자 **사업 참여 취소**

### 〈협회·단체 등 채용 절차〉





5

# 선정 방법

## ■ 선정 방법

### - 채용 통보 서류

<p>협회·단체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문 및 근로자 채용 통보서 ※ 개인 정보는 가림처리</li> <li>○ 공동안전관리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,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1부</li> </ul>
<p>공동안전관리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동안전관리자(개인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※ 개인 정보는 가림처리</li> <li>○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</li> </ul>

### - 근로 조건

- 1) 4대 보험 필수 가입
- 2) 공동안전관리자의 근무는 협회·단체 등과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 적용 가능
- 3)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
- 4) 급여는 '24년 최저임금 (시급 9,860원, 월급 2,060,740원) 이상 지급
- 5) 휴식시간,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며,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조합 취업규칙,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조건이 사업 참여 기준과 다를 경우 지원 불가

6

# 지원금 지급 방법



# 6

## 지원금 지급방법

### ■ 지원금 지급방법

- ✓ (지원금 지급방법)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협회·단체 등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고, 공단은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4대 보험 가입 내역(최근 1년) 등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
  - \* 지원금 신청 시 채용결과(관련 증빙 등) 제출 (기존 직원 전환인 경우도 확인)
- ❖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개월 선지급 후 연말 정산 처리
  - \* 선금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
- ❖ 공동안전관리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사 시 퇴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고 정산 이후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
- ❖ 재참여 시 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결과를 제출하되, 선지급없이 연말 정산 처리
- ❖ 연말 정산은 공단의 지출마감 일정, 서류검토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추진

7

# 공동안전관리자의 지원 방안



## ■ 공동안전관리자의 지원방안

- ✓ **(매뉴얼)** 공동안전관리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**업무수행 매뉴얼 개발·보급**
  - 위험성평가 기법 및 활용 방안, 법적 의무사항(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)의 이해, 산업안전보건 일반 사항 등
- ✓ **(교육)** 공동안전관리자의 **전문역량 배양**을 위한 **교육 실시**
  - **(시기)**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(지원금 신청)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육 시작
  - **(교육방법)**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하여 진행

### < 교육내용 및 시간 >

교육내용	교육시간(hr)
계	40
산업안전보건법령,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	4
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	20
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	4
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	4
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	2
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	6



## ■ 공동안전관리자의 지원방안

- (협업체) 공동안전관리자 간 소통, 안전담당자 간 소통, 우수사례 발굴 ·

공유, 안전보건 정보 전달 등을 위한 지역별 협업체 구성 · 운영

- ※ 분기별 1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동안전관리자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애로사항 등 논의



8

# 공동안전관리자의 관리 방안



# 8

## 공동안전관리자의 관리방안

### ■ 공동안전관리자의 관리방안

- ✓ (수행일지) 공동안전관리자는 지원 업무에 대한 **수행일지**를 기록하고 보관
  - 공동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, 업무수행 내용, 개선의견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전달(현장에서 작성하여 제공 가능)
  - 업무수행 일지는 정기적(매월 1회)으로 공단이 제공하는 **전산망 (K2B) 등을 활용하여 업로드(Up-Load)**하여 제출
- ✓ (활동점검) 공동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속 관리
  - \* 공동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여부 확인 등
  - (정기) 공단 직원 **2인 1조**를 편성하여 협·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 점검 실시('24년 10월 中)
  - (수시) 제출한 업무수행 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**부실여부 파악**
  - (결과조치) 점검결과는 공동안전관리자에게 피드백하여 업무수행 능력 및 성과 향상을 유도
  - \* **허위·부정·해태** 등의 경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성 등을 검토하여 **지원 중단, 환수 등 조치**

9

# 연간 추진일정



## ■ 연간 추진일정(안)

일 정	세부내용	비고
'24.2.14.(수) 14시~	- <u>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</u> (서울·전체)	KTX 서울역 대회의실
'24.2.19.(월)~3.22(금).	- <u>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</u> (30일)	공단 홈페이지
'24.2.19.(월) 14시~	- <u>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</u> (인천·경기권역)	KTX 광명역 대회의실
'24.2.21.(수) 10시~	- <u>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</u> (대전·충청권역)	KTX 대전역 우암홀
'24.2.26.(월) 14시~	- <u>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</u> (대구·경북권역)	KTX 동대구역 회의실 103호
'24.2.28.(수) 14시~	- <u>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</u> (광주·전라권역)	KTX 광주역 무등산실
'24.2.29.(목) 14시~	- <u>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</u> (부산·경남권역)	공단 경남지역본부 대강당
'24.3.25.(월)~3.29.(금)	- <u>지원대상 선정심의</u>	공단 일선기관
'24.4.1.(월)~4.5.(금)	- <u>선정대상 계약체결</u>	공단 일선기관
'24.4.8.(월)~4.26.(금)	- <u>공동안전관리자 채용실시</u>	협·단체
'24.2.26.(월)~4.26.(금)	- <u>업무수행 매뉴얼 개발 및 보급</u>	공단 본부
'24.4.29.(월)~5.3.(금)	- <u>공동안전관리자 직무수행교육</u> (대면)	공단 본부
'24.4.29.(월)~	- <u>공동안전관리자 전문화교육</u> (이러닝)	공단 본부
'24.4.29.(월)~	- <u>공동안전관리자 업무수행</u>	-
'24.5월~	- <u>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선지급</u> (6개월)	공단 일선기관
'24.10월 中	- <u>공동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모니터링</u>	공단 일선기관
'24.11월~12월	- <u>공동안전관리자 잔여</u> (2개월) 운영비 정산	-



10

# 질의응답



## ■ 예상 질의응답

- ✓ (비용문제) 동 사업은 공단 80%, 협회, 단체 20% 비용부담으로 이루어 지는데 협회, 단체에서 지자체 예산(보조금 등)을 받아서 참여가 가능한지?
  - ☞ 가능합니다. 또한 협회, 단체 등 소속 사업장에서 일정 비용을 모아 집행해도 됩니다.
- ✓ (사업참여) 중기회, 경총 등 협회, 단체 명단 외 사업주 단체 참여도 가능한지?
  - ☞ 사업참여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단체 등은 참여가 가능합니다.
- ✓ (단체기준) 비영리단체이면서 별도 임원이 없는 사업주 단체(2인이상) 참여가 가능한가요?
  - ☞ 불가합니다. 협회, 단체 기준에 부합해야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.
- ✓ (직원전환) 기존 업무를 하는 직원을 전환해서 공동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?
  - ☞ 가능합니다. 다만, 전환된 직원은 공동안전관리자 업무를 해야하며 공단 정기 모니터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## ■ 예상 질의응답

- ✓ (사업참여 대상) 승강기 설치 업종(건설업과 혼재)도 참여 대상인지?
  - ☞ 승강기 설치작업이 건설현장이다 보니 건설, 제조 업종의 혼재형태로 보여지나, 참여사업자가 건설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참여 가능합니다.
- ✓ (공동관리자 근무지) 협회, 단체 등 주소는 대전이지만 현장이 다른 지방이라 근무지가 다르게 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?
  - ☞ 채용 주체인 협회, 단체 등에 소속이 될 뿐 **근무지에 제한은 없습니다.**
- ✓ (안전분야 경력문제) 소규모 기업은 한사람이 맡는 업무가 다수이며 특히 안전만 담당하는 경우가 없는데, 자격요건 검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  - ☞ 네. 안전분야 자격증 소지자 외에 안전분야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, 대상자의 경력증명서, 업무분장표 등을 참고하여 해당분야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모호한 경우 공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.





## ■ 예상 질의응답

- ✓ (겸직허용) 협회 상근직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 가능하도록 검토 가능한지?
  - ☞ 신규채용이나 전환 등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동안전관리자는 공고문에 적시된 안전업무만 담당하여야 합니다.
- ✓ (법적인 권한) 공동안전관리자의 법적 지휘 및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?
  - ☞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며, 컨설턴트의 역할 수행합니다.
- ✓ (업무전환) 전문 업체를 관리하는 해당 협회, 단체 등 소속직원을 전환하여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?
  - ☞ 네. 전환이 가능합니다. 단, 소속은 협회, 단체 등 소속이며,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전담으로 수행해야 합니다.



**협단체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.**